

2027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(보) 임용 계획 공고

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관(보)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책임감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0일
헌법재판소사무처장

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

- 임용예정 직위: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
- 임용예정 인원: ○○명

2 담당업무

-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·연구
-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·교육

3 응시자격요건

가. 응시자격요건(「헌법재판소법」 제19조 제4항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
-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(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)*(제1호)

*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군법무관·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

-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(제2호)
 - 국회,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(제3호)
 -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, 정부,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(제4호)
 -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 제2조1)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(제5호)
- ※ J.D.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

나. 임용결격사유(「헌법재판소법」 제19조 제6항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) 제2조(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) 「헌법재판소법」 제19조제4항제5호의 "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4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

4

임용기준

- 법적 사고능력·전문성·공익성·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(보)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
-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추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용(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)

5

시험방법 및 임용절차

가. 원서접수: 2026. 9. 10.(목) ~ 9. 28.(월) 18:00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10. 하순경

다. 인성검사: 2026. 10. 하순경

- 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
-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 온라인 실시

라. 1차 시험: 2026. 11. 7.(토) 실시 예정

- 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
- 장소: 헌법재판연구원(선릉역 5번 출구 나라키움 역삼B빌딩)
- 전형방법: 서면작성 및 집단토의면접
-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서면작성·토론 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실무역량을 평가
- 서면작성 및 평가
 - 제시된 토의 과제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60분간 완전한 문장형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(컴퓨터 작성)
 - * 서면 작성에 필요한 법령 제공
 - * 서면은 제출 후 집단토의면접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응시자와 면접위원에게 배부 예정

- 법문서 작성 능력 및 문장의 논리성 등을 평가
- 집단토의면접 및 평가
 - 편성된 조별로 해당 안건을 주제로 한 집단토의 진행
- 서면 평가와 집단토의면접 평가 등을 종합하여 1차 면접 합격자 결정

마. 1차 시험 합격자 발표: 2026. 11. 중순경

바. 2차 시험: 2026. 11. 28.(토) 실시 예정

- 대상: 1차 시험 합격자
- 장소: 헌법재판소(안국역 2번 출구)
- 전형방법: 개별면접
- 지원자의 경력사항 및 인성 등을 평가

사. 2차 시험 합격자 발표: 2026. 12. 초순경

아.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

※ 헌법연구관 임용 대상자에 한함

자. 재판관회의 상정·의결 및 최종합격자 발표

6

임용시기

- 임용예정일: 2027. 2. 1. 예정
- 군법무관·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: 전역 후 임용
-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: 변호사시험 최종합격 후 임용

7

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6. 9. 10.(목) ~ 9. 28.(월) 18:00

나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

다. 방문접수

- 주소: (03060)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인사과(220호)
-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(09:00~12:00, 13:00~18:00) 내 가능

라. 인터넷접수

- 홈페이지 주소: recruit.ccourt.go.kr(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)

8

제출 서류

가. 공통 서류(각 1부)

- 응시원서
- 이력서
 - ※ 모든 항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함(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'해당 없음' 기재)
- 자기소개서(양식에 맞추어 작성서식과 분량 준수)
- 최종학교성적증명서(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)
-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(대학교 이상)
-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 - ※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'새소식'란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) 다운로드 작성

- 주민등록표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-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징계이력 및 소속기관 재직 중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법학전문대학원 위법행위 사실확인서 등,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, 기타 소속기관 재직 중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나. 지원자격별 서류

-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(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)
 -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
 -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
 -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
 -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
 -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
 - ※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추후 제출
 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
 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최종 학위증명서
 - 법률학 분야 집필논문
- 국회,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 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(재직자에 한함)
-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, 정부,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
-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
 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(재직자에 한함)
-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
- 박사학위 증명서 및 학위 논문
 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- ※ 가. 나. 항의 모든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맞춰 “철하지 않은 상태”로 제출 요망
 ※ 채용 관련 추천서는 제출하지 말 것

9

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서류전형 및 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,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라.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지원서(이력서 등)의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

책임으로 합니다.)

사. 기타 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(☎ 02-708-3516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"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, 헌법재판소에서
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."